

『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1일

제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매입한 공장용지를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임대함으로써 산업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고
- 도레이사의 5공단 신규투자에 따른 부지 임대 지원으로 전후방 산업 및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다. 주요내용

【부지매입】

- 사업내용 :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53.9천㎡
- 위 치 : 구미 하이테크밸리(5공단)내
- 사업기간 : 2014년 ~ 2018년(5년간 1단계)

○ 기준가격 : 14,000백만원(사업비 기준)

※총사업비 70,100백만원 (국비42,100 도비14,000 시비14,000)

○ 입주기업 : 도레이첨단소재(주) ※ 11. 6. 28 MOU체결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
○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과 「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구미 하이테크밸리(5공단)내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

○ 검토결과

▪ 본 계획안은

「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」 및 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」에 따라 현금 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 매입 후 임대함으로써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